

# 대학원 명예졸업에 관한 내규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자격)** 본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.

- ① 국가와 민족의 명예를 빛내고 국가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
- ② 본 대학교와 한국교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
- ③ 기타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로 해당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

**제3조 (인정학과)** 명예졸업 학과는 명예졸업 대상자가 본 대학원에 재학했던 학과로 한다.

**제4조 (수여절차 및 수여시기)** ① 명예졸업 수여는 해당 대학원장이 명예졸업 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② 명예졸업증서의 수여는 매학기 학위수여일에 한다.

**제5조 (수여자관리)** ① 명예졸업증서 수여자는 명예졸업수여대장에 기록하고 학적부에 명예졸업사항을 등재한다.

②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.

**제6조 (증서양식)** 본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명예졸업 증서의 양식은 별지와 같다.

**제7조 (졸업의 취소)** 명예졸업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, 즉시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본 내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내규의 개·폐) 본 내규의 개정 및 폐지는 해당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<별지 서식(1)>

명예 제 호

## 명 예 졸 업 증 서

성 명 :

년 월 일 생

위 사람은 본 대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로 본  
대학교 대학원 명예졸업에 관한 내규에 따라 ○○대학원  
(      학과      전공) 명예졸업자로 인정하여 이 증서를  
수여함.

년 월 일

서울신학대학교    ○○ 대학원장    ○○ 박사    ○ ○ ○ (인)

서울신학대학교    총      장    ○○ 박사    ○ ○ ○ (인)